

별표 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1.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식서비스 분야”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1531. 경영컨설팅업

2.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를 말한다.
3.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연구개발계획서 표준서식의 별첨1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단,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